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12.

발의자 : 김정호 · 김남희 · 박정
허종식 · 박희승 · 윤후덕
이수진 · 전재수 · 이훈기
정성호 · 임미애 · 이연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, 임금증가, 상생협력 등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투자 · 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.

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. 이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함.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약 100조원씩 증가하는 반면,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.

한편, 매년 투자 · 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가 늘어온 만큼 해당 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, 가계소득이 증대하도록 경제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설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3

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0조의32제2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, “2027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0조의32(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(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“미환류소득”이라 하고,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“초과환류액”이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(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해당 사업연도 [<u>2025년 12월 31일</u>]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</p>	<p>제100조의32(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</p>

